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단319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0. 17.

판결 선고2024. 11. 14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진주시 E 대 188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0.

3. 15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22. 7. 28. 접수 제344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F의 D에 대한 아래 도표1 기재 각 채권을 아래 도표2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양수하고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.

D	(유) F	2019-02-25	2026-02-25	20,000,000원	20.9%
D	(유) F	2019-04-30	2026-04-30	24,000,000원	17.5%
D	(유) F	2019-09-27	2022-09-27	2,000,000원	24%

2020-08-07	자산양수도계약	(유) F	(유) G
2020-08-31	계약인수합의	G	(유) H

나. 그런데 D는 2020. 3. 15.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2022. 7. 2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하였다.

다. D는 2020. 6. 29.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21. 4. 1.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, 이 사건 계약 당시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였고, 이러한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따라서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D가 2020. 6. 29.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21. 4. 1. 변제금 미납으로 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20. 3. 15. 이 사건 계약 당시에도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, 달리 이 사건 계약 당시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D가 이 사건 계약 당시

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
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기동